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육교직원 보수의 현실화에 관한 시책 마련 〉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8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육교직원 보수의 현실화에 관한 시책 마련	3
 [참고자료 1]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8
[참고자료 2]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9
[참고자료 3]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종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4.

다. 회 부 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육교직원 보수의 현실화에 관한 시책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와 최소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시책의 마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① ~ ⑤ (생략) <신설>	제4조(책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해당 기준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각 인건비 지급기준 비교]

구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상	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u>인건비 지원 어린이집</u> ¹⁾ , ② <u>직장어린이집</u>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u>사회복지시설</u> ※ <u>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 제외</u> ²⁾
고시 주체	<u>교육부</u>	<u>보건복지부</u>
근거 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³⁾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⁴⁾

1) 현행법 제36조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의미함.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2)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 그런데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건비 지급 기준 모두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기준 없이
어린이집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바,

교육부의 2024년도 보육 실태 조사⁵⁾에 따르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
집의 보육교직원 보수(평균 211만원)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보수(평균 251만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보육교사의 54.8%
가 보수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남.

[조사년도별·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급여수준]

(단위:만원)

구분	기본급 (a)	수당			총급여 (f=a+b+c+d)	(수)
		중앙정부·지자체 지원(b)	어린이집 자체(c)	중앙정부·지자체 직접 지급(d)		
2024년 조사	227.1	10.0	6.9	43.2	287.3	(15,947)
국공립	246.8	12.2	8.9	44.6	312.5	(4,934)
사회복지법인	253.4	12.3	4.0	46.7	316.3	(814)
법인·단체등	253.4	12.9	6.8	44.6	317.8	(327)
민간	211.0	8.0	4.5	44.1	267.7	(5,686)
가정	212.7	10.9	5.0	38.7	267.1	(3,204)
직장	237.3	4.4	18.8	42.9	303.6	(983)
2021년 조사	199.8	15.0	7.9	40.9	263.5	(15,586)
2018년 조사	168.9	38.4	5.7	-	213	(18,389)

※ 자료 : 교육부 2024 보육실태조사

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현행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평균	평균	
						2021년	2018년
근무환경(전반)	2.1%	17.5%	58.6%	21.8%	3.0	3.1	3.2
물리적 환경(공간)	3.3%	21.8%	54.3%	20.6%	2.9	3.0	3.1
인적 환경(동료, 원장, 학부모 관계)	1.1%	11.5%	60.7%	26.7%	3.1	3.1	3.2
급여 수준	16.1%	38.7%	35.4%	9.8%	2.4	2.6	2.9
근로 및 휴게 시간	13.6%	34.9%	38.8%	12.7%	2.5	2.7*	3.1
휴일 및 연차	8.3%	24.1%	44.3%	23.3%	2.8		
일에 대한 보람	1.8%	10.9%	61.3%	26.0%	3.1	3.1	3.2

※ 자료 : 교육부 2024 보육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한명인 보육교직원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최소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를 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시책의 마련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2026년도 기준에 따르면, 1호봉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은 각각 231만원 및 229만원⁶⁾으로 오히려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또한,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저임금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호봉 기준은 보육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간호사 기준으로 산출함.

및 임금 격차 문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보수 기준이 아닌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서울, 울산, 경남, 창원), 시·도교육청(대구)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①현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체계와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 기관보육료(보조금) 및 보육교사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 1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1	28,785,600	2,398,800	27,793,200	2,316,100	26,773,200	2,231,100
2	29,446,800	2,453,900	27,915,600	2,326,300	26,852,400	2,237,700
3	30,262,800	2,521,900	28,003,200	2,333,600	26,902,800	2,241,900
4	31,108,800	2,592,400	28,161,600	2,346,800	26,952,000	2,246,000
5	31,899,600	2,658,300	28,642,800	2,386,900	26,998,800	2,249,900
6	32,628,000	2,719,000	28,837,200	2,403,100	27,040,800	2,253,400
7	33,700,800	2,808,400	29,467,200	2,455,600	27,079,200	2,256,600
8	34,893,600	2,907,800	29,940,000	2,495,000	27,120,000	2,260,000
9	35,802,000	2,983,500	30,549,600	2,545,800	27,152,400	2,262,700
10	36,744,000	3,062,000	31,231,200	2,602,600	27,194,400	2,266,200
11	37,273,200	3,106,100	31,538,400	2,628,200	27,243,600	2,270,300
12	38,290,800	3,190,900	32,442,000	2,703,500	27,440,400	2,286,700
13	39,079,200	3,256,600	33,061,200	2,755,100	27,966,000	2,330,500
14	39,883,200	3,323,600	33,717,600	2,809,800	28,550,400	2,379,200
15	40,999,200	3,416,600	34,440,000	2,870,000	29,096,400	2,424,700
16	41,376,000	3,448,000	35,078,400	2,923,200	29,590,800	2,465,900
17	42,178,800	3,514,900	35,854,800	2,987,900	30,199,200	2,516,600
18	43,066,800	3,588,900	36,595,200	3,049,600	30,927,600	2,577,300
19	43,884,000	3,657,000	37,263,600	3,105,300	31,624,800	2,635,400
20	44,629,200	3,719,100	38,001,600	3,166,800	32,346,000	2,695,500
21	45,261,600	3,771,800	38,936,400	3,244,700	33,141,600	2,761,800
22	46,060,800	3,838,400	39,697,200	3,308,100	33,832,800	2,819,400
23	46,774,800	3,897,900	40,330,800	3,360,900	34,489,200	2,874,100
24	47,492,400	3,957,700	41,050,800	3,420,900	35,113,200	2,926,100
25	48,303,600	4,025,300	41,710,800	3,475,900	35,797,200	2,983,100
26	49,054,800	4,087,900	42,368,400	3,530,700	36,312,000	3,026,000
27	49,750,800	4,145,900	42,942,000	3,578,500	36,775,200	3,064,600
28	50,472,000	4,206,000	43,567,200	3,630,600	37,393,200	3,116,100
29	51,136,800	4,261,400	44,254,800	3,687,900	37,984,800	3,165,400
30	51,864,000	4,322,000	44,851,200	3,737,600	38,600,400	3,216,700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배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도입 : ('05년) 생활시설, ('09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를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성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

- **(적용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 국고지원)

*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 총당)

- **(적용 원칙)** 사회복지시설 관할 지자체·국고지원시설 소관부서 등이 별도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 부여

- **(내용 및 구성)**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

- 사회복지직은 지역·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로 구성

*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은 별도 기본급 표를 적용

- **(개정방법)**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을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 확정 後 가이드라인 확정(매년 1월경)

참고 3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2,395,400	2,346,100	2,297,300	2,240,300
2호봉	2,451,700	2,392,100	2,342,900	2,296,600
3호봉	2,520,500	2,450,600	2,391,000	2,339,000
4호봉	2,616,800	2,517,300	2,449,600	2,390,000
5호봉	2,718,100	2,615,800	2,515,100	2,448,500
6호봉	2,804,300	2,717,000	2,613,600	2,513,000
7호봉	2,909,400	2,803,100	2,714,900	2,612,600
8호봉	3,011,300	2,900,300	2,792,600	2,712,800
9호봉	3,133,600	2,969,400	2,881,900	2,788,500
10호봉	3,216,600	3,049,700	2,954,400	2,879,400
11호봉	3,332,200	3,100,700	3,035,100	2,947,000
12호봉	3,426,500	3,188,600	3,082,100	3,018,700
13호봉	3,494,800	3,269,000	3,162,200	3,070,100
14호봉	3,557,000	3,347,000	3,238,500	3,120,600
15호봉	3,613,200	3,408,100	3,294,600	3,177,400
16호봉	3,668,300	3,469,200	3,352,300	3,233,500
17호봉	3,730,500	3,527,800	3,406,000	3,284,900
18호봉	3,790,500	3,588,900	3,459,800	3,361,200
19호봉	3,853,900	3,647,400	3,518,300	3,426,000
20호봉	3,911,300	3,706,000	3,575,900	3,492,500
21호봉	3,971,300	3,765,900	3,631,900	3,551,400
22호봉	4,030,100	3,829,300	3,691,600	3,577,100
23호봉	4,087,400	3,882,200	3,750,300	3,636,300
24호봉	4,143,700	3,939,600	3,806,600	3,693,100
25호봉	4,198,700	3,992,300	3,862,700	3,740,600
26호봉	4,254,800	4,042,200	3,915,400	3,770,900
27호봉	4,291,800	4,087,600	3,965,300	3,813,400
28호봉	4,331,900	4,117,100	4,006,700	3,851,700
29호봉	4,369,300	4,132,500	4,026,900	3,862,900
30호봉	4,411,700	4,159,200	4,053,200	3,887,300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